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공포·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계획 변경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함(안 제3조)
- 다. 공청회등의 개최방법과 의견 제출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조사방법을 정함(안 제5조)
- 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예정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재청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의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관광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학교 및 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
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또는 시행 14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또는 시행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또는 시행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 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등(설문조사의 방식은 제외한다)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서 정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기초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관리·보존·전승·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교육사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합계획·시행수립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
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322